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0.

복지문화위원회

1. 추진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
- 제출일자: 2023. 11. 3.(금)
- 회부일자: 2023. 11. 3.(금)
- 상정 및 의결: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3. 11. 17.)

2. 제안이유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이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안)	운영방식	세대수
한양수자인더펠리시티 1블럭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송현동 78-3번지 일원 (송현동)	252.01m ² (지상1)	49 (예정)	민간위탁	500
한양수자인더펠리시티 2블럭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송현동 78-3번지 일원 (송현동)	239m ² (지상1)	47 (예정)	민간위탁	521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 내용
 - 어린이집 운영(아동 입소·상담 등 보육, 인사·회계 등)
 -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등 재산관리
- 위탁기간 : 5년(준공 일정에 따라 추후 결정)
- 수탁자 선정방식: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선정

4.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5조(위탁운영)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제7조까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 설치·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정부는 공공보육 이용률 제고를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전국 어린이집 시설수 및 아동수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어린이집(개소)	39,171	37,371	35,352	33,246	30,923
국공립	3,602	4,324	4,958	5,437	5,801
민간	13,518	12,568	11,510	10,603	9,726
가정	18,651	17,117	15,529	13,891	12,109
보육아동(명)	1,415,742	1,365,085	1,244,396	1,184,716	1,095,450

※ 출처: e-나라지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시설수 및 아동수 현황

-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제4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 한양수자인더팰리시티 1·2블럭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그 설치·운영에 대한 동의 의견이 제출(2023. 9. 27.)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협약을 체결(2023. 10. 27.)하였으며, 위탁체는 공개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는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약: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